

 한국소비자원 Korea Consumer Agency	<h1>보도자료</h1> <p>“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국민의 기관”</p>	 페이스북 @kcanews  인스타그램 @kca.go.kr	
이 자료는 2월 20일(수) 조간 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방송인터넷 매체는 2월 19일(화) 12시]			
배포일	2019년 2월 18일(월) (총 8쪽)	담당부서 담 당 자	안전감시국 생활안전팀 김병법 팀장 (043-880-5831) 채희영 대리 (043-880-5572)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 교통약자 전용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전용 주차구역의 부족, 설치기준 부적합 등으로 안전한 이동권이 침해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의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관공서, 상업시설, 공동주택 각 10개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

□ **대다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에 부적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 설치장소(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하여 설치할 것), 주차면 규격 (3.3m*5m 이상, 단 평형식은 2m*6m 이상), 표시 및 안내표지 등

그러나 조사대상 30개소 시설 중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주요 부적합 사례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미표시(21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미설치(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미설치(10개소), 주차면 규격 미달(2개소),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 설치(1개소) 등이었다.

구분	적합	부적합	합계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 표시	8개소	21개소	29개소
출입구·승강기 연결 통로 설치	15개소	14개소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 설치	19개소	10개소	
주차면 규격 충족	27개소	2개소	
출입구·승강기 근처 설치	28개소	1개소	

□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검토 필요

관련 법규에 설치근거가 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달리 노인·임산부는 주차 관련 제도적 배려가 부족한 실정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적으로 설치한 사례가 있으나,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 있었으나,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

교통약자 주차구역 이용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44.0%),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돼 단속·계도 강화 및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배달 차량>





<노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관용차>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안전관리 및 단속 강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규정 마련 ▲노인 전용 주차구역 필요성 검토를 관련 부처에 요청할 예정이다.

 <p>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p>	<p>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p>	  <p>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	---	--

< 붙임 >

1 일반현황

□ 교통약자 개념

- (정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함(제2조 제1호).
- 이에 비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 등’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제2조 제1호).
- (용어) 양법에서 사용하는 ‘교통약자’와 ‘장애인 등’에는 의미상 큰 차이가 없어, 본 조사에서는 “교통약자”로 통일하여 사용함.
- 또한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서 노인이란 용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고령자는 노인으로 통일하여 표현함.

□ 교통약자별 전용 주차구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됨.
-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는 정부에서 발급한 주차표지를 차량에 부착한 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
- 주차표지는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하급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함.
* 비자치구청, 행정복지센터(舊 주민센터) 등
- 주차표지는 본인 또는 보호자 운전용이 있으며, 보호자 운전용 표지로는 보행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가능함.
- 주차표지가 아닌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부착된 차량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음.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은 10만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방해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노인 전용 주차구역)** 노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부 시설에는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노인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 현재 노인 전용 주차구역과 관련하여 발급되는 주차표지는 없음.
 - 관련 법규상 노인에 대한 명문화된 정의는 없고, 만 65세 이상자를 노인으로 보는 것이 보편적임.
 - 다만,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 가능한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부재함.
 - 노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나, 일부 시설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 등의 명칭으로 임산부, 영유아 동반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설정되어 있음.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의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고 있으며, 임산부는 보건소*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6개월 후까지 유효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및 하급 행정기관에서 발급 가능
 - 임산부 외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주차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시설이 대다수 이나 영유아의 연령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음.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

구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노인 전용 주차구역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법률상 근거	있음	없음	없음
설치기준	있음	없음	없음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가능	불가능	불가능
표지 (발급장소)	있음 (행정기관)	없음	있음 (보건소)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수도권(서울경가인천) 다중이용시설 30개소 및 동 시설의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110대
 - (다중이용시설) 관공서 10개소, 상업시설 10개소, 공동주택 10개소
 - (주차 차량)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노안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각 30대
- **(조사항목)** 교통약자 주차구역 설치실태 및 이용실태
 - (설치실태) 설치 여부, 설치기준(설치장소, 주차면 규격, 표시, 안내표지) 충족 여부
 - (이용실태) 교통약자 주차구역 주차 차량 규정 준수 여부

□ 설치기준 모두 충족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없어

- **(설치 여부)** 조사대상 다중이용시설 30개소 중 29개소(96.7%)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나머지 1개소(3.3%)에는 설치되지 않음.
- **(설치기준 충족 여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된 29개소 모두 관련 법규상 설치기준을 한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했음.
 - **(설치장소)** 설치장소 관련 설치기준 충족 여부는 다음과 같음.
 - **(출입구·승강기 근처)** 29개소 중 28개소에는 출입구·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나머지 1개소에는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에 설치됨.
 - ※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면 동선이 길어져 주차장 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아짐.
 - **(통로)** 29개소 중 15개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 출입구·승강기에 이르는 통로가 설치됐으나, 나머지 14개소에는 설치되지 않음.
 -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통로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주차장 내에서 운행 중인 차량에 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당할 우려가 높아짐.
 - **(주차면 규격)** 29개소 중 27개소는 3.3m*5m 이상의 주차면 규격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나머지 2개소는 규격기준을 위반함.
 - ※ 규격 미달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장애인이 이용할 경우 승하차 과정에서 야기되는 불편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짐.
 - **(표시)** 29개소 모두 바닥에 1.3m*1.5m 이상의 장애인 전용 표시가 되어 있음.
 - 다만, 29개소 중 8개소는 선에 50cm*58cm 이상의 장애인 전용 표시가 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21개소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음.

- (안내표지) 29개소 중 19개소에는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나머지 10개소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규격) 안내표지가 설치된 19개소 중 18개소는 0.7m*0.6m의 규격기준을 충족했으나, 나머지 1개소는 규격기준을 위반함.
- (높이) 19개소 중 18개소는 1.5m의 높이기준을 충족했으나, 나머지 1개소는 높이 기준을 위반함.
- (기재사항) 19개소 모두 도움 연락처, 주차금지 및 과태료, 주차방해금지 및 과태료, 신고 연락처 중 하나 이상의 기재사항을 누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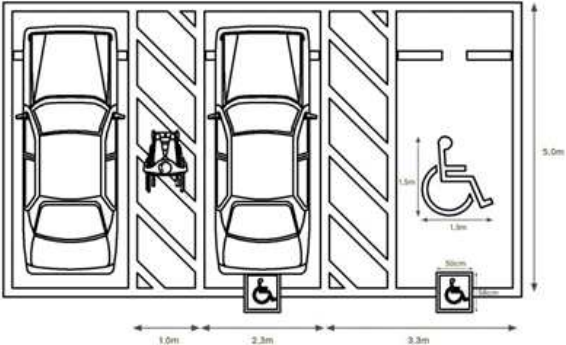
□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찾기 힘들어

- (노인 전용 주차구역) 조사대상 다중이용시설 30개소 중 5개소(16.7%)에는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나머지 25개소(83.3%)에는 설치되지 않음.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사대상 다중이용시설 30개소 중 4개소(13.3%)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됐으나, 나머지 26개소(86.7%)에는 설치되지 않음.

□ 교통약자 주차구역 무단주차 사례 빈번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조사대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8대(56.0%)는 보행장애인이 탑승하고 주차표지가 부착됐으나, 나머지 22대(44.0%)는 주차 금지 차량이었음.
 - 불법주차 사유는 '주차표지 미부착' 15대, '보행장애인 미동승' 6대, '주차불가 표지' 1대의 순임.
- (노인 전용 주차구역) 조사대상 노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7대(56.7%)는 고령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13대(43.3%)는 무단주차 차량임.
-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조사대상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43.3%)는 임산부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나머지 17대(56.7%)는 무단주차 차량임.

[참고 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상세 설치기준

구분	세부기준
설치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입구·승강기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할 것 출입구·승강기에 이르는 통로는 단차를 없애고 유효폭은 1.2m 이상으로 차량이 다니는 길과 분리해 설치할 것 통로와 차량이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색상·질감은 바닥재와 다르게 해야 함.
주차면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3.3m*5m 이상(평형식은 2m*6m 이상)으로 할 것 단차를 없애고 기울지 않은 장소에 설치할 것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것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면에는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장애인 전용 표시(바닥 1.3m*1.5m, 선 50cm*58cm)를 할 것 
안내표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할 것 규격은 0.7m*0.6m로, 높이는 1.5m로 할 것 도움 연락처, 주차금지 및 과태료, 주차방해금지 및 과태료, 신고 연락처를 기재할 것

[참고 2] 장애인 차량 관련 표지 종류

구분	본인 운전용	보호자 운전용
주차가능		
주차불가		